



# UN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선언(종자에 대한 권리)

2019.01.21. 배포

UN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된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선언: Declaration on the Right of Peasant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총 30조 중에서 다음은 종자에 관한 권리입니다.

## □ 제19조 종자에 대한 권리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종자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a)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전통지식을 보호할 권리
- b)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얻는 데에 공평하게 참가할 권리
- c)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결정에 참가할 권리
- d) 자가 채종한 종묘의 보존, 이용, 교환, 판매할 권리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종자와 전통지식을 유지, 관리, 보호, 육성할 권리를 가진다.

당사국은 종자에 대한 권리를 존중, 보호, 실시하고, 국내법으로 인정해야 한다.

당사국은 충분한 품질과 양의 종자를 파종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소농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사국은 소농이 자신의 종자 또는 자신이 선택한 현지에서 입수할 수 있는 기타 종자를 이용하는 것과 함께, 재배하길 바라는 작물과 종류를 결정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당사국은 소농의 종자 제도를 지지하고, 소농의 종자와 농업생물다양성을 촉진해야 한다.

당사국은 농업연구개발이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필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연구개발의 우선순위와 그 시점을 결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그들의 경험을 고려하여 그들의 필요에 따라 고아작물이나 종자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당사국은 종자 정책, 식물품종보호, 기타 지적재산권, 인증제도, 종자 판매법이 소농의 권리, 특히 종자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소농의 필요와 현실을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